체 코

◈ 체코, 정치권의 세제 개혁안 논쟁 가열

최근 체코 재무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적자 규모가 금년 2월 한 달에만 215억 코루나(5억 9,630만 달러) 증가함에 따라 1·2월 합계 249억 3,000만 코루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동안 32억 5,000만 코루나의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하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 이러한 대규모 재정적자는 일련의 1회성 요소들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일례로 금년 1월 러시아와의 쌍방채무상환에 의해 5억 3,60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동 수입은 현재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외환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말까지 코루나貨로의 단계적 태환을 거쳐 예산수지에 수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반면 작년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금융구조조정비용 121억 코루나는 예산수지에 비용으로 포함되어, 이 두 가지가 예산적자 규모를 크게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그러나 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세수(稅收)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0억 코루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의 세수 감소가 상품 수입(輸入)의 감소 및 코루나貨의 강세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감소 및 그로 인한 재정적자의 악화가 문제됨에 따라 체코의 주요 3개 정당들은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실시할 세제 개편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어느 정당도 현재의 불필요하게 복잡한 일부 세제 규정을 적절히 재정비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세제 개편에 소극적, 야당은 적극적인 개편 요구

현 집권당인 체코 사회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제 개편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및 계속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소비세율의 인상 등의 제한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하 소재 Karel 대학교 경제연구센터의 Lubomir Lizal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여당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세제 개혁안도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도우파 야당인 시민민주당의 Petr Necas 부총재는 이번 총선에서 세제 개혁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여 여당을 공략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4년 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를 20%의 일률 과세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던 시민민주당은, 당시의 주장을 완화하여 법인에 대한 이윤세 및 개인 소득세를 현행 최저 소득세율인 15%의 일률 과세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 과세는 복잡한 세액 계산 및 징세 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적자 감축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가입 예정국의 가입조건 충족 진행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 최근호를 통해, 과세와 관련된 분쟁 및 탈세 행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5%와 22%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조절할 것을 체코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체코의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는 상당한 행정비용을 소모하는 비효율적 체계로 비판받고 있는데, 100코루나(2.75달러)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2.5코루나(0.07달러)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4자 연합(Quad Coalition)을 구성했던 4개 정당들 중 자유연맹(Freedom Union)과 기독교민주연맹(Christian Democratic Union)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Czecho-Slovak People's Party)은 6월의 총선을 앞두고 초당파적 연합을결성하였는데, 동 연합은 EU 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 및 22%에서 7% 및 18%로 조정하여 양자간의 차이를 축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연합은 시민민주당이 제시한 소득에 대한 일률 과세안이 소득공제 대상 항목을 상쇄하여 오히려 전체 납세자의 2/3에 이르는 근로자 계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 비판하며, 대신 근로소득의 세액 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의 인하(현행 31%에서 단계적으로 20%로까지 인하)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세제 개혁안 필요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세제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코 세제의 가장 복잡하고 말썽많은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기업의 체코내 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인데,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해 체코 정부와 정당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규투자시 10년간의 조세 경감 및 재투자시 부분적 조세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같은 중부 유럽의 체제전환국인 헝가리에 비해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헝가리 역외회사 체제"(Hungarian Offshore Company Regime)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우는 헝가리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책은, 외국기업의 헝가리내 자회사가 헝가리 은행 및 법률회사의 고객이고 임원진의 최소 50%가 헝가리 납세자일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하여 평균 법인세율 18%의 1/6에 불과한 3%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헝가리는 민영화 작업의 완료 이후에도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꾸준한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동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1999년부터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중·동구 지역의 사업본부를 헝가리에 설립하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와 정당들은 헝가리와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비록 체코가 현재 중부 유럽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도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이중과세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다 궁극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세 개혁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체코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吳 炅 駟】